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7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장경태·박희승·강준현

박지원・김 윤・서미화

김용만 • 양부남 • 민형배

채현일 • 박해철 • 이성윤

이광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정차'한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접근하는"을 "접근하거나 정차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	4		
자동차가 <u>접근하는</u> 경우에는	<u>접근하거나 정차하는</u>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			
야 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